

상사중재제도 및 상사중재원 활용방안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중재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양당사자가 자유롭게 선임한 제3자(중재인)에게 분쟁의 해결을 부탁하여 그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복종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사중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유관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의 모든 상거래분쟁을 상담 및 중재를 통하여 신속·공정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도 보장된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법 제35조)

뿐만 아니라, 중재를 통한 외국과의 분쟁해결은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외국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저렴·공정·편리·전문성이 뛰어난 상사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시 양당사자가 분쟁 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또는 실제 분쟁발생시에 상사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쟁이 일단 발생하면 양자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시 상사분쟁제도를 이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의 조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사중재제도 및 상사중재원 활용방안〉

1. 기관 : 대한상사중재원(大韓商事仲裁院)

원장 : 김종희(金宗熙)

영문기관명칭 :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역센터 무역회관 43층(서울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211-1 대한통운빌딩 8층(부산지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kcab.or.kr>

조직 : 2부(중재부, 총괄지원부), 1실(알선·상담실), 1지부(부산지부)

중재인단 : 1,060명(건설, 해운, 무역, 모든 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집단)

국내 법조계	208명	국내 회계사, 변리사 등	41명
국내 실업계	258명	국내 외국인	25명
국내 학계	294명	외국거주 한국인	7명
국내 공공 기타 단체	104명	외국거주 외국인	123명

2. 연혁 : 1966. 3. 22. 국제상사중재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부설)

1970. 3. 21. 대한상사중재협회

1980. 8. 29.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 개편

3. 법적근거 : 가. 중재법(1966. 3. 16. 법률 제1767호 공포)

* 중재법 개정 (1999. 12. 31. 개정 법률 제6083호)

나. 상사중재규칙(1966. 10. 13. 대법원 승인 발효)

* 2000년 3월중 개정규칙 대법원 승인 예정

다. 대외무역법 제41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제42조(선적전 검사와 관련된 분쟁조정)

제53조(권한의 위임, 위탁)

4. 사업목적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해결 또는 예방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과 기업체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회원 : 가. 통상회원(무역에 종사하는 법인 및 개인)

나. 특별회원(무역과 연관된 업을 영위하는 자와 기타 중재원 사업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명	절차 및 사업내용	구분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판정의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법원의 판결과 동일(개정중재법 제35조) * 국제 : 외국 법정에서도 승인되고 강제집행이 보장됨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 현재 121개국 가입, 한국은 1973. 5. 9. 가입) □ 무역업자 활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 : 외국 계약당사자에 대한 분쟁 신청 국내 기업체에 대한 분쟁 신청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분쟁 신청 *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적정, 공정, 신속, 경제적으로 처리 가능 	
알선 (국내/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계약(합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알선사건의 48%가 중재원 담당자의 도움으로 우호적으로 해결되고 있음 *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가능 □ 알선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 당사자회의(우편, 전화로 대체 가능) → 피제기자 답변서 제출 및 처리회신 작성 → 결과통지 → 수락여부 결정 → 재알선 가능 * 재알선에서도 실패할 경우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로 해결이 가능함 □ 알선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1. 1.부터 무료 □ 연도별 알선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564건), 98년(519건), 99년(349건) 	<p>무료 (2000. 1. 1. 부터 무료화)</p>

사업명	절차 및 사업내용	구분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중재절차, 알선절차, 중재원 활용방법 등에 관한 제반 문의사항 * 계약서 작성시 분쟁조항 등 사전 작성 지도 * 분쟁발생후 비공개리에 자문 가능 □ 절차 상담신청(내방, 전화, 서신) → 중재원 상담직원 즉시 조치 → 재상담 가능 □ 98년(4,221건), 99년(5,964건) 	무료
분쟁관련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 * 중재판정 사례집(현재 제7집까지 발행) * 국영문 표준계약서집 * 해외중재기관 연락처 및 주요업무 안내 * 한국중재법규 및 외국중재법규 * 중재지(계간) * 중재제도 안내책자 * 영문 뉴스레터 * 중재절차진행 비디오테입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무료
분쟁예방 및 처리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국의 모든 기업체, 정부기관, 경제유관기관, 연수원 등 □ 내용 분쟁예방 및 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 * 사례제공 및 설명, 최근 클레임 동향 * 중재조항삽입요령 * 분쟁예방기법 * 개정중재법규 축조 해설 * 해당 강좌 요청기관에서 요구하는 별도사항 	무료

사업명	절차 및 사업내용	구분
분쟁예방 및 처리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용 전액무료 : 강사료, 교재대 등 □ 신청방법 무역업체에서 개최요구일 15일전 중재원 홍보팀에 신청 (전화 : 551-2069, FAX : 551-2020) 	

2000년도 주요 추진업무

가. 무역업자 서비스 개선

◇ 알선 업무 무료화

- 시기 :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 효과 : 무역업자의 분쟁처리 경비절약

◇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중재정보 공개

- 최근의 중재판정, 알선사례 및 개정중재법규, 해외 중재정보 및 자료공개
- 인터넷을 통한 무역업자 질의시 48시간이내 즉시 조치

◇ 현장민원실 개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의 업무협조로 2000년 1월부터 시행

- 직원 1인 파견
- 경비 : 중재원에서 부담
- 해당분야 : 무역·판로분야
- 참여내용 : 현장상담후 현장조치, 서류접수후 알선 및 중재절차유도

◇ 무역업체 무료강좌

- 한국무역협회, 지역상공회의소, KOTRA 등에 상사중재강좌 설정
- 중소기업청 무역수출설명회 활용
- 국내사건 및 수출관련 사건 모두 가능
- 무역업자측에서 요청시 무료로 강좌개최 가능

◇ 수출지원센터 직원파견

- 수출지원센터에 월1회 중재원 직원 1인 파견 가능

- 현장상담 및 애로사항 수렴후 무역업자에 대한 분쟁서비스 개선

• 2000. 1. 1.부터 가능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지원시 계약서 작성 등 업무지원가능

• 지역근소 무역업자가 지원세터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건의

• 동센터에서 상사중재원에 해결 협조 의뢰

• 중재원에서 무료상담, 알선 및 중재유도

• 금년부터 가능

나. 중재절차 대폭 개선

◇ 상사중재규칙 개정

• 중재법 개정에 따른 상사중재규칙 개정

• 중재판정부 역할 강화 및 중재절차의 신속 진행

◇ 중재편람 발간

• 무역업자가 중재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재신청에서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

◇ 중재절차 개선

• 집중심리제 강화(심문횟수 감소)

• 중재심문보조원 충원 및 속기록에 의한 심문기록

• 중재서류 송달실무 개선

• 중재인 자질 향상 및 관리 강화(신규 중재인 대폭 영입, 기존 중재인 교육 강화, 중재인 매뉴얼 발간)

◇ 중재 전산시스템 확충

• 최신 기종으로 전환 및 중재 프로그램 신규 개발

• 법규 개정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무역업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 중재판정 집행 내역을 활용할 수 있는 현황조사

다. 국제협력 및 조사·연구사업 강화

◇ 중재협정체결

• 현재의 2개국 22기관 ⇒ 24개국 24기관

-
- 체결대상 : 캐나다(British Columbia Int'l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
인도(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 ◇ 업무협조약정 체결 확대(2개국 2기관)

- 중국, 스코틀랜드

- ◇ 제3국 중재기관으로의 위치 확보 연구

- 한·중·일 중재기관 협조방안 연구

- ◇ 국제 중재동향 조사

- The 2000 ICCA Int'l Arbitration Conference 참가
- UNCITRAL 제33차 본회의 참가

라. 중재제도 저변확대

- ◇ 중재영역 확대

- 부동산, 금융, 전자상거래, 기술분야 등으로 확대

- ◇ 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 개최

- 대상 : 전국 무역·무역통상 및 법률전공 대학생을 대상, 30개 대학 목표
- 시상 : 금·은·동상 각 상패와 부상
- 대회기간 : 2000. 9. ~ 2000. 10.

- ◇ 사법연수생 교육

- 대상 : 사법연수생 10명
- 일시 : 2000. 7. 1. ~ 7. 31.

- ◇ 중재조항삽입권장활동 강화

- 무역업체 현장방문
- 표준계약서 조사 및 분쟁조항 점검
- 업종별 협회, 단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중재조항 삽입권장

- ◇ 외부전문가 초빙강좌

- 무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중재법, 상사중재규칙, 전자상거래분쟁 등 강의